

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76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11. .
발 의 자 : 이춘화 의원 외 11인

제안이유

-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으로 함(안 제3조).
- 지원금은 장애등급을 1~3급, 4~6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지원하며,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함(안 제4조)

제정조례안 : 별첨

- 관계법령별첨서 : 「장애인복지법」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-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장애인가정" 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.
2. "출산지원금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" 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자)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.
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. 다만,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액)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다만,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.

1. 장애등급 1급 ~ 3급 : 100만원 이내
 2. 장애등급 4급 ~ 6급 : 70만원 이내
-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제5조(신청기간)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절차)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1.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
2.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764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11. 13.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확보 기간이 필요하여 시행일을 연기하고자 함.

2. 주 요 골 자

- 부칙 중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7월 1일로 수정함.

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**

부칙 중 2009년 1월 1일을 2009년 7월 1일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09년 1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09년 7월 1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